

제 목	일본 금융청, 스테이블 코인 규제관련 가이드라인 발표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법률상 정비

- 일본 금융청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및 자금세탁 대책 강화 내용이 포함된 자금결제법을 지난 6월 개정*(6.10일 공포, 시행일 미정)한 데 이어, 12.26일 동 법 시행과 관련한 내각부령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

* 정식 명칭은 “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결제제도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 개정법률”

- 개정 자금결제법은 일본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률로 법정화폐와 연동된 가격으로 발행되는 ‘디지털 머니 유사형’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발행자와 중개자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
- 26일 발표된 내각부령과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용자 보호, 자금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구체화

————— ◆ 개정 자금결제법의 주요 내용 —————

- ① ‘디지털 머니 유사형’ 스테이블 코인 규제*, ② 고액 송금이 가능한 전자기프트권 등의 자금세탁 대책 강화, ③ 자금세탁방지 공동시스템에 대한 규제(‘외환거래분석업’ 신설) 등

- * (1) 규제대상 : ‘디지털머니 유사형’ 스테이블 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
 (2) 발행자 : 은행, 자금이체업자, 신탁회사로 한정
 (3) 거래업자<신설> : 등록제 도입, 기준보다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대책 요구

2.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요 규제

- (대상) 스테이블 코인 중 “법정통화의 가액과 연동한 가격(예 : 1코인=1엔)으로 발행되어 발행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상환을 약속”하는 것(디지털머니 유사형)을 “전자결제수단” 정의^{*}에 포함

* ① 물품 구입,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불특정한 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고, 불특정한 자에게 구입 및 매각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(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통화표시자산[#]에 한함), ②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서 ①에 열거하는 것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, ③ 특정신탁수익권 등

일본통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일본통화 또는 외국통화로 채무의 이행, 환불 등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자산(자국통화 또는 외국통화 표시 지급수단)

- 그 이외의 스테이블 코인^{*}은 기존 암호자산으로 규율

* 알고리즘으로 가치의 안정을 시도하는 스테이블 코인 등

- (발행자 규제)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는 기존의 은행, 자금이체업자^{*}에 (특정 신탁수익권에 대하여) 신탁회사가 포함

* 현행법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‘발행행위’는 ‘환거래’(자금의 이체에 관한 업무)에 해당 하므로 은행 및 자금이체업자만 수행 가능

- (진입 규제) 전자결제수단의 매매나 교환, 이의 증개나 대리 등의 업을 수행하기 위해 “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”을 신설하는 한편 동 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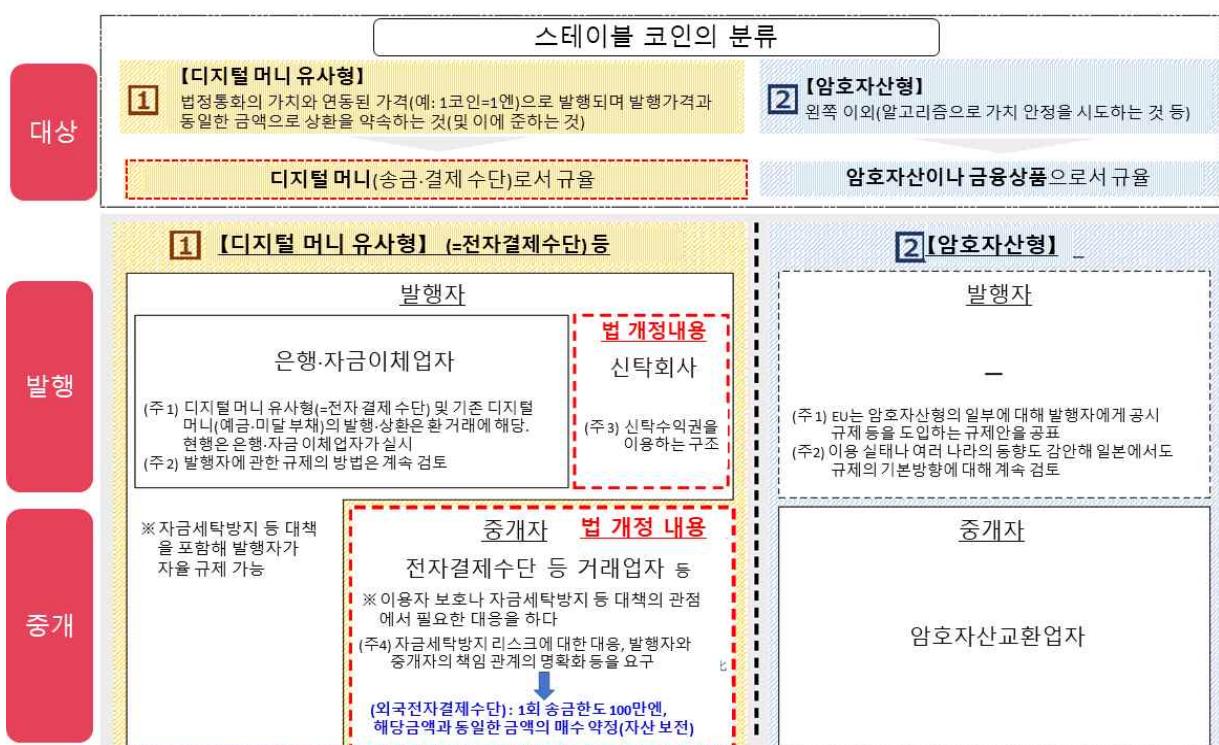
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에 대한 규제

● 진입규제	- 등록제 (일정한 재산적 기초, 적정하고 확실한 업무 수행 체제 정비 등)
● 정보규제	- 관련 정보의 누설, 멸실 또는 훼손 방지 및 그 밖의 정보안전 관리조치 강구
● 이용자보호	- 각종 설명 및 정보 제공 의무, 금전 등의 예탁 금지, 자산 분리 관리
● 발행자와 계약 체결 의무	- 이용자 손해 발생시 배상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계약 체결
● AML·테러 자금 조달 방지	- 「범죄수익이전방지법」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본인 확인 등을 의무화

(이용자 보호)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자 또는 거래업자(해외발행 코인)에게 자산 보전 의무를 부과

- “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”는 해당 외국전자결제수단(해외발행 스테이블 코인)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 등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를 할 것을 약정(내각부령, 가이드라인)
- 해외발행 코인에 대해서는 송금 1회당 이전 가능금액을 100만엔 이하로 한정(내각부령, 가이드라인)

개정 자금결제법 및 동 시행령 · 가이드라인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



주 : 일본 금융청 자료 재작성

3. 향후 진행 방향

일본 금융청은 금번 공개한 내각부령,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(22.12.26 ~ 23.1.31일)하고 동 절차 종료 후 개정 자금결제법의 시행 일을 결정할 예정

- 개정 자금결제법은 공표일(22. 6. 10일)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(政令)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